

[별표 1]

경력산정기준(제9조관련)

1. 자격·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%를 적용하는 경력
 - 가. 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·감리·유지보수·관리·진단·점검·검사에 관한 기술업무
 - 나.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
 - 다.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
 - 라. 교육관련법·직업훈련기본법·기능대학법 및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·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
 - 마. 전력기술관련 단체·업체등에서 근무한 자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
2. 자격·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80%를 적용하는 경력
 - 가.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설계·제조·검사등 기술업무
 - 나.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·공사·감리·검사·정비등의 기술업무
 - 다. 계량법에 의한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
 - 라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
 - 마. 건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
 - 바. 전기기계기구의 설계·제작 또는 수리등 기술업무
 - 사.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전자·통신기술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통신기술·전자통신기술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·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
 - 아. 전자·통신 관계법에 의한 전기·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
3. 자격·학력 취득전 경력기간의 50%를 적용하는 경력
 -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